

자동차매매계약서

※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1.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			
등록 번호		차대 번호	
차 종		차 명	
2. 계약내용 (약정사항)			
제1조 위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.			
매매금액	— 金	만원정 (₩)	
계 약 금	— 金	원정은 계약 시 지불하고,	
중 도 금	— 金	원정은 년 월 일 지불한다.	
잔 금	— 金	원정은 년 월 일 지불한다.	
제2조 (당사자 표시) 매도인을 “갑”이라하고 매수인을 “을”이라 한다. 제3조 (동시이행 등) “갑” 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“을” 에게 인도한다. 제4조 (공과금부담)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,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“갑” 이 부담하고, 기준일의 다음날부터의 분은 “을” 이 부담한다. 제5조 (하자담보책임) “을” 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“갑” 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. 제6조(사고책임) “을” 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. 제7조(법률상의 하자책임)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 기타 행정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“갑” 이 그 책임을 진다. 제8조(등록지체책임) “을” 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“을” 이 진다. 제9조(할부승계특약) “갑” 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“을” 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을 “을” 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. 제10조(위약금) 매도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고, 매수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.			
특약사항			
1. 명의 이전은 년 월 일 시 까지 완료한다.			
3. 계약당사자 및 입회인 인적사항			년 월 일
매도인	주소		
	주민등록번호	성명	
매수인	주소		
	주민등록번호	성명	
입회인	주소		
	주민등록번호	성명	